즉시 배포용: 2016년 7월 2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가 보험사들의 정신 건강 공정 기준에 대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금융서비스부("DFS")에서 보험사들이 정신 건강 장애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지침을 발령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 서신에서, DFS는 건강보험사들에게 의료적 또는 수술적 보호에 관해서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부보범위를 제공해야 하는 보험사들의 책임을 고지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감독을 통해서 약물 남용 및 정신 건강 치료를 위해서 보험을 제공해야 할 자신들의 의무를 회피하려고 추구하는 보험사들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것입니다. 이 조치를 통해서, 보험사들은 우리가 모두를 위해서 보다 강력하고, 건강한 뉴욕을 만들기 위해 추구한다는 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 지침은 약물 사용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 및 투약 이용에 대한 부담스러운 보험 장애 사항을 제한하는 최근 법률에 Cuomo 주지사가 서명한 직후에 뒤따른 것입니다. 뉴욕주 보험법하에서, 보험사는 입원환자 치료에 대해서, 또는 약물 치료 투약에 대한 보다 큰 이용 범위에 대해서 사전 보험 승인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 법에서는 약물 사용 장애로 고통받는 개인에 대해서 보호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주에서 지정한 객관적 기준을 사용할 의무를 보험사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융서비스부 책임자 Maria T. Vull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FS는 모든 보험 부보범위에서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의 동등한 처우에 대해 변함 없이 전념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의료 및 수술적 혜택에 관해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에 대해서도 동등한 부보범위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DFS는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뉴욕 주민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고, 그들에게 권리가 인정되는 혜택에 대해서 부당하게 보험료를 청구받지 않도록, 건강보험사들이 비용 분담 및 활용 심사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을 준수하고, 적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DFS의 지침 서신에서는 미연방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연방 정신 건강 동등 처우 및 중독 형평성에 관한 법률(Mental Health Parity and Addiction Equity Act, "MHPAEA")의 준수에 대한 지침을 발행했다는 점을 보험사들에 고지하고 있습니다. MHPAEA에서는 건강 보험 플랜들이 의료적 또는 수술적 보호에 관해서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부보범위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코페이(copay), 본인부담금, 그리고 건강 보험 플랜에 의해 담보되는 입원환자 또는 외래환자 방문에 대한

제한 등과 같은 정량적 제한은 물론이고, 사전 승인, 플랜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제공자들, 그리고 플랜이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등과 같은 비정량적 치료 제한이 포함됩니다.

문제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우려사항을 고려해서, DFS는 MHPAEA 규정 준수 문제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 일환으로 소비자, 보험사 및 서비스 제공자로부터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DFS는 의견을 검토해서, 모든 보험사들에 대한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보험혜택 신청에 있어서의 일관성을 보장하게 될 향후의 지침이나 명령을 결정할 것입니다.
아울러, DFS는 보험사들에게 플랜이나 보험증서에서 적용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범주의 비정량적 치료 제한이 MHPAEA 요건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 사전 승인 및 서비스 제공 전 통지 요건
- 저가 처방 우선 규약
- 개선 가능성 요건
- 서면 치료 계획 제공 요건
- 그리고, 환자 규정 미준수 규칙, 거주지 치료 제한, 지리적 제한 및 면허 교부 요건 등의 기타 요건

이해관계자들은 mentalhealthparity@dfs.ny.gov로 DFS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DFS가 보험사들에 보낸 지침 서신의 사본은 여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